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상우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주택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완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2. 12.~3. 24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2호마목1)가)의 과태료란 중 “4만원”을 “2만원”으로 하고, “5만원”을 “3만원”으로 하며, “10만원”을 “4만원”으로 하고, “15만원”을 “5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목 1)나)의 과태료란 중 “13만원”을 “4만원”으로 하고, “15만원”을 “8만원”으로 하며, “30만원”을 “12만원”으로 하고, “45만원”을 “15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목 1)다)의 과태료란 중 “21만원”을 “6만원”으로 하고, “30만원”을 “10만원”으로 하며, “50만원”을 “16만원”으로 하고, “70만원”을 “20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목 1)라)의 과태료란 중 “24만원”을 “8만원”으로 하고, “40만원”을 “13만원”으로 하며, “60만원”을 “20만원”으로 하고, “80만원”을 “25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목 1)마)의 과태료란 중 “30만원”을 “10만원”으로 하고, “50만원”을 “15만원”으로 하며, “80만원”을 “25만원”으로 하고, “100만원”을 “3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